

노사 협의회 의결

(노동자이사 선거관리규정)

2020.7.8.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주의료원지부

원장 유상주

지부장 김혜진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공주의료원 정관 제8조에 따라 공주의료원의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병원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전자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노동자이사 후보 득표 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임원추천위원회 호선)과 노사대표 각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권한) 위원회는 본 규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협조) 위원회에서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공주의료원은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공주의료

원에서 부담한다.

제5조 (소집 및 공고) 노동자이사 후보자 선출 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 구성 즉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조 (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7조 (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전에 실시한다. (투표는 2일동안 실시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5일까지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입후보자 등록

제8조 (입후보자 등록) ① 노동자이사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선거권자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하며, 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실을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전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입후보자의 공고) ① 위원회는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정관 및 관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입후보등록을 확정한다. 단, 입후보등록 신청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이를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에 대한 기호(투표용지 등에 인쇄될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부여는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 ④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 제10조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입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45cm × 세로 65cm 이내로 한다.
- ② 입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 ③ 입후보자는 사내 전산망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한 정견 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익일부 터 선거일 전일 24시까지로 한다.(근무시간 중 선거운동은 유급으로 보장한다.)
-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전산망에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로 게재 및 유포하는 행위
7. 중도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8. 이 규정 및 공명한 선거에 위배되는 유인물을 배부하는 행위
9.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8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3조 (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2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의결로 해당 입후보자에 대한 공식 사과 명령, 입후보 등록 무효 또는 선출 무효, 공주의료원 징계위원회 회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14조 (선거권)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15조 (피선거권) ① 공주의료원에서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는 노동이사 후보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정관 11조 및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2.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와 의료원으로부터 노동조건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은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실·과장의 이상의 자)

③ 노동이사로 선출될 경우 노동이사는 임기동안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활동을 유지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 또한 병행할 수 없다.

제16조 (선거인명부) 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실시하되,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8조 (명부 수정) 선거인 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된 사실을 지적한 노동자가 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및 추가하고 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장 투표와 개표

제19조 (노동자이사 후보의 선출) ① 노동자이사 후보는 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노동자이사 후보는 (재적 선거인수의 과반 이상이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순으로 최대 2배수까지 선출할 수 있다.

단,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익일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제20조 (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식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투표에 의한 노동자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제21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된 선거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선거권자가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 투표를 종료하는 때에는 위원은 투표함에 서명 날인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부재자 투표) 위원회는 부재자 투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시, 장소, 방법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참관인) 입후보자가 지명한 1인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제24조 (투표·개표사무) ① 투표·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관리관 1인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보조할 투표·개표사무원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투표사무원이 개표사무원을 겸할 수 있다.

제25조 (개표) ① 투표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개표를 선언한다.

② 위원장은 투표관리관의 입회하에 투표함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개표하고, 개표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 신청의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즉시 해당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의결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완료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부정선거의 처리) 위원은 선거 기간 중 제13조 각 호의 위반 또는 기타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위원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선출 무효
3. 경고 처분

제8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28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입후보자가 없거나 임명 예정 직위 수의 미달한 때
2. 투표종료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재적 선거인수의 50%에 미달할 때
3. 노동자이사 후보로 선출된 자가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또는 임명권자의 임명 전에 사퇴·퇴직·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후보자 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한다.)하여 추천 또는 임명할 대상이 없게 된 때
4. 위원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거무효 또는 선출무효를 결정한 때
5. 제19조제2항에 의한 선출자가 없을 때

② 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선거무효에 대해서는 투표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의 분실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거무효를 결정하고, 선출무효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의결로써 선출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라 함은 그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도 당락이 서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 (보궐선거) 노동자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9장 보 칙

제30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위원회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거인의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며,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등을 준용한다.

제31조 (운영세칙)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 (규정의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3조 (징계회부) 위원회는 위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소속직원이 고의로 공정 선거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공주의료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서			사진 3×4cm	
성명	김 청 령(金靑廉)			
주소	00도 00시 00길 00 00아파트 101-501			
생년월일	1970년 1월 1일(만48세)	사원번호	600101	
소속부서	00부서	직급	0급	
근무이력	근무기간	근무부서		
	2005. 2. 1. ~ 2008. 4. 30.	00부서 선임		
	2008. 5. 1. ~ 2017.12. 31.	00부서 과장		
<p>위와 같이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20 년 ○ 월 ○ 일</p> <p>입후보자 : 김 청 령 (인)</p> <p>공주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p>				
구비서류	1. 후보자등록 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입후보자 추천서(별첨 양식) 1부 4. 재직증명서 1부			

주 : 허위경력, 허위학력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자 기 소 개 서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2000.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군복무,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3호】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 후보자 추천서

□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 : 소속 ○○부서 성명 김 ○ ○

상기인을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 월 ○ 일

공주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연 번	소속부서	사원번호	성 명	서 명
1	○○부서	750614		
2	○○부서	601018		
3	○○부서	700808		
4	○○부서	730429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 소 : 00도 00시 00길 00
성 명 : 김 청 령
사 원 번 호 : 600101
등 록 일 시 : 20 년 0 월 0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0 월 0 일

공주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1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 소 : 00도 00시 00길 00
성 명 : 김 청 령
사 원 번 호 : 600101
등 록 일 시 : 20 년 0 월 0 일 10 시 00 분

위와 같이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0 월 0 일

공주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5호】

선 거 결 과 공 고

20 년 ○월 ○일 실시한 공주의료원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 월 ○ 일

공주의료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기 호	성 명	득 표 수	비 고
1	이 순 신	240	선 출
2	홍 길 동	150	선 출

사측 대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원 장 유 상 주



노측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주의료원지부장 김 혜 진

